

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(검증)을 위해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을 (빠른)등기우편 접수로 대신합니다.

- 서류제출 기한: 2021. 3. 26(금) ~ 3. 31(수)까지 등기우편 발송분에 한함. (문의: 1661-0069)
- 서류제출 주소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, 더샵 오포센트리체 견본주택 (우편번호: 16827)
-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동,호수 배정 지침 참가순번

타입	특별공급 예비 순번	타입	특별공급 예비 순번	타입	특별공급 예비 순번
59A	1번~30번	76A	1번~9번	84B	1번~21번
59B	1번~15번	76B	1번~18번	84C	1번~24번
59C	1번~30번	84A	1번~21번	84D	1번~42번

※ 예비입주자는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300%(3배)가 선정되어 있지만, 잔여 세대가 많지 않아 예비입주자 추천 참가 대상을 타입별 예상 잔여 세대수(3.26일 기준)의 3배수에 한하여 1차로 진행하며,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다음 순번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예정이니,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2.08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비입주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불이익은 예비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제출된 서류 외 사업주체는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 (※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계약불가)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등기우편 발송 시 빠른등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.)

※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 및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.

※ 계약시 계약자(1인) 또는 대리인(1인)과 동반1인 입장 가능합니다.

다자녀가구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

필수	추가 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.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(*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
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(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'전체포함'하여 발급)
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(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) 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재혼가정의 자녀(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)가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*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○	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•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 (*'상세'로 발급)
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 제출 *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 (※'임신확인서' 인정 안됨)
○	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○	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명서류	본인	• 당첨자 본인(혼자)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※아래표 '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명서류' 참조]
○		사업주체가 필요 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	해당서류	• 무주택 소명서류: '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'에 따른 해당 서류 ※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(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) ※ 특별공급의 경우 제53조제9호 미적용: ' 소형-저가주택등'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 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• 당첨사실 소명서류: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

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 (해당 당첨자)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확인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자)			
○		해외근무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반드시 제출)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(*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
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 되도록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불가